제264회 임시회 2007. 10. 22(월)

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

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고 일 준

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 출 일 : 2007년 10월 8일

○ 회 부 일 : 2007년 10월 10일

3. 제안이유

- 가.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 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| 을 개정하고 공유재산관리기준을 변 경함에 따라
- 나. 이와 관련하여 「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」의 인용조문 및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은 물론,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근거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조문 조정

- 나.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을 이전기관에 따라 국가기관과 개별 영리행위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명시(안 제32조제2항 신설)
 - 중앙행정기관 : 100분의 80
 - 기타 공공기관 : 100분의 50
- 다.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요건 및 범위 변경(안 제40조)
 - 좁고 긴 모양의 토지에 폐하천 추가(제2호)
 - 페도·폐구거·폐제방 → 폐도·폐구거·폐제방·폐하천
 - 사유건물이 위치한 보존부적합 토지의 매각(제1호·제4호)
 - 일단의 소규모 토지 범위 조정
 - · 시 지역 1,000m²이하, 기타지역 2,000m²이하인 토지로 일치
 - 도 소유외의 건물을 구체적으로 명시(제4호)
 - 도 소유외의 건물 → 도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
 - 수의매각 가능 최대면적의 조정
 -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하되 그 2배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지역 300㎡ 이하, 일반시의 동지역 500㎡ 이하, 광역시·군의 읍·면지역 1,000㎡ 이하
 - →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(단독주택일 경우 200 m² 이하)
 - 공유토지 지분권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일단의 면적 명시(제5호)
 - 제1호(삭제) →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 300m²(시의 동지역 500m², 광역시·군의 읍·면지역 1,000m²) 이하
- 라. 분수림의 설정을 삭제(안 제44조)

- 마.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한도액으로 변경(안 제64조)
 - 총 보상금 : 1,000만원 → 3,000만원
 - 필지별 보상금
 - 관인도용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 : 200만원 → 600만원
 - 기타재산 : 100만원→300만원

5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6. 검토 의견

- 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조문 및 중복된 조문 정비 관련
 - 이 안 제39조 본문 개정은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변경으로안 제39조 본문중 영 제28조 제8항을 영 제42조로 정비하려는 것임.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개정사항(2006.12.30)		
구분	법령내용	비고
종전	제28조((잡종재산가격의 평정 등)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가계산 등을 기준으로 부동산 경기 등 시장상황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. 다만,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재산가격 평정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	삭제
개정	제42조 (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잡종재산에 대하여 제27조 및 제39조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매각기준 중 매각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인건비, 토지매입비(보상비를 포함한다)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하한으로 정하여야 한다	전문 개정

- 안 제40조 제1항 제1호의 삭제 및 안 제40조 제1항 제2호, 제4호, 제5호 개정은
 -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 중 보존부적합1)면적의 범위

¹⁾ 재산의 규모·형상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재산으로서 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대체재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

조항인 안 40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가 중복되므로 대상의 명확화 및 제1호 면적이 제4호 면적에 비해 협소하므로 대상의 적정성을 위해 제1호를 삭제하려는 것임.

- 안 제40조 제1항 제2호, 제4호, 제5호의 개정은 공유재산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지침 (행정자치부 '07. 4. 17)에 이미 규정한 사항에 맞게 자구수정 등 조문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려는 것임.
- 이는 상위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등 개정으로 인한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 료됨.
- 다만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개정내용 중 폐도·폐구거·폐제방외 에 폐하천을 추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.

나.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면 신설 관련

- 안 제32조제2항의 신설은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『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』(2007. 1.11, 시행 2007. 2.11) 및 『같은법 시행령』(2007. 2.12, 시행 2007. 2.12)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규정을마련하는 것으로
 - 이는, 『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

법』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공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

- "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(안)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은 최대 감면율을 적용하여 100분의 80분 적용하고, 개별 영리행위를 수행하는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100분의 50분의 감면율을 적용하려는 것임.
- 이는 일면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한 면은 있으나 공공기관 활성화 및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보충설명과 우리도 추진중인 진천·음성 혁신도시 건설 지역내 공유재산 현황 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

다. 은닉재산 신고자 보상금 한도액 상향조정관련

이 안 제64조 제1항의 개정은

보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 치단체 소유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수준을

보상효과 제고 등을 위해 개정(2006.12.30)된 상위법령(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84조)의 수준에 맞추어 종전 1천만원 한도에서 3천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현재까지 은닉재산의 신고자가 없고, 관련예산의 편성이나 실질 보상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 할 때, 보상금 지급수준의 상향조정

측면 보다는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효과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짐.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개정사항(2006.12.30)

구분	법령내용	비고
종전	제84조 (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)	
	②제1항의 보상금은 <u>1천만원을 한도로</u> 하여 은닉재산의 종 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을 조례로 정한다.	
개정	제84조 (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)	
	②제1항의 보상금은 <u>3천만원을 한도로</u> 하여 은닉재산의 종	
	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을 조례로 정한다.	

라. 기타사항

- 안 제39조(조성원가 매각)의 개정과 안 제42조(분수림의 조성)의 삭제2)는
 - 제64조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등 상위 관련 규정 의 개정(2006.12.30)에 따른 것으로
 - 이는 관계 법령의 개정과 합리적으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

²⁾ 개발 장려하던 70년대 말경 조림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01년도 산림법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된데 따른 것임

안 제37조 관련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개정사항

(2006.12.30)

구분	관련 법령 내용	
종전	제27조 (잡종재산가격의 평정 등)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가계산 등을 기준으로 부동산 경기 등 시장상황에 따라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. 다만, 제42조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재산가격 평정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개정	제27조 (잡종재산가격의 평정 등) ⑧ 삭제 제42조 (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잡종재산에 대하여 제27조 및 제39조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매각기준 중 매각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인건 비, 토지매입비(보상비를 포함한다)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 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하한으로 정하여야 한다.	